

제42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9일(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1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7)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9)
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1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18.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20.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1)
21.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8)
2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4)
24.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5.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26.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27.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28.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29.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30.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1)
 31.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3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여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3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3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3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3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37.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0)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2)
-

상정된 안건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5
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5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 5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 5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 5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 5
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5
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5
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5
1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5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5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7) 5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9) 5

| | |
|---|---|
| 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 5 |
|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 5 |
|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 5 |
| 1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 5 |
| 18.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 5 |
|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 5 |
| 20.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1) | 5 |
| 21.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 5 |
|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8) | 5 |
| 2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4) | 5 |
| 24.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 5 |
| 25.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 5 |
| 26.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 5 |
| 27.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 5 |
| 28.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 5 |
| 29.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 5 |
| 30.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1) | 6 |
| 31.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 6 |
| 3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여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 6 |
| 3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 6 |
| 3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 6 |
| 3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 6 |

| | |
|---|---|
| 3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 6 |
| 37.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0) | 6 |
|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2) | 6 |

(14시07분 개의)

○**소위원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신학 1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위원이 되신 서일준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원래 산자소위에 있다가 중기소위 갔다가 바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오늘 심의해야 될 법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꼭 집어서 의견을 내 주시고 별 의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제1차관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통상교섭본부장 또 제2차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김성원 의원과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은 오늘과 내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1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7)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9)
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1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18.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20.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1)
21.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8)
2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4)
24.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5.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26.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27.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28.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29.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30.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1)
31.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3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여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3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3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3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3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37.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0)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2)

(14시11분)

○**소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먼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직접구매 해외제품·해외통신판매중개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제품안전정보망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은 시중 유통제품, 정식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그리고 시중 유통제품의 수거·파기 등 조치 권고·명령,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폐기·개선조치 요청 등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직접구매하는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에서는 현행 관세법에서 관세청장과 관련 부처가 물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합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9조의4 1항 후단과 4항이 불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쪽 조문대비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는 별다른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제9조의4에서 수정의견으로 관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후단은 삭제하는 것으로 먼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직전이나 직후로 단계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단서의 경우에 통관 전후 단계를 구별하는 것을 없앴고 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개정안 뒷부분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공표나 10쪽의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은 박성민 의원안 등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수정의견대로 수정하는 데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일준 위원** 차관님, 소비자가 직접구매하는 해외제품 피해 발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직구 피해 발생이요?

○**서일준 위원** 예. 그것 조사한 게 있습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입니다.

직접피해가 발생한 것은 국내제품과 국외제품 다 소비자원의 유해정보 수집 그리고 병원 등등에서 하고 있는데 유해제품 조사는 많이 있지만 그게 소비자가 어떤 병에 걸렸다 든지 이런 통계까지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소비자가 신고를 해야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소비자가 신고를 쪽 하는 것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그게 병원에 갔다든지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조사는 없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데 해외 직구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그게 없습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작년 초부터 소위 중국 대규모 회사들에 따른 비중이 늘어서 유해한 제품도 많이 유통될 거라는 언론 보도도 많고 해서 작년 초부터 관세청, 서울시, 산자부, 환경부 등등이 이런 근거 없이도 많이 조사를 하고 유해한 제품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공표하고 언론에 계속 보도를 해서 소비자들이 많은 경각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이고 그리고 공표의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공표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해외 협력 통신판매자들, 이 사람들 협력 없어도 됩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현재도 대형 쇼핑몰과 협력 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면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일준 위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예. 그렇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뒤에 나오지만 국내대리인도 지정하고 그러면 훨씬 체계적이고 할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지금 이 법에서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 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구매 제품에서 지금 이 정의 규정에 사용되고 있는 자가사용의 정의가 뭔가요? 아마 한자로는 스스로 자(自)에, 집 가(家)에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가사용의 의미가 매우 불분명해 보인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지금 현재 관세법 등등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사업자가 정식 수입하는 것하고 그것은 관리 체계가 다 형성이 됩니다, 기존 법률에서.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자가사용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도 그 규정상 분명한가요, 적용이?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현재 다른 법률에서도 자가소비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재판매하지 않고 개인이 구매를 한 자가 소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언상 보게 되면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이게 수입식품 선례가 있는데요, 입법 사례가. 이 부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조항을 저희가 좀 인용을 했고요. 관세법 등에 따르면 반대로 이것은 관세법의 예외가 되거든요, 자가사용이 되면. 그러면 이것을 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다른 쪽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 따르게 되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다음에 판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관세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촉되게 됩니다.

○**곽상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보게 되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구매하는 것인데 이때 해외라는 그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왜 그러냐면 해외 사이버몰이라는 게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이 도메인을 운영하는 법인의 설립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로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해외 도메인만 가지고 있으면 해외 사업체인지 그런 점들이 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이것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규정상 불분명해 보인다고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위원님,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 거래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와 유사한, 거의 같은 조문으로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곽상언 위원 다른 법에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답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정상 불분명하다는 얘기거든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 분명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여러 업체들이, 지금 제가 머리에서 떠오르고 있지만 해외에서 벼가 있고 해외에 도메인이 있고 해외 업체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런데 법률이라는 게 사후적,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정을 할 때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하는 게 정의 규정이지 않습니까? 정의 규정 자체로써 규율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이 법을 만들게 된 게 국내의 사법체계가 법적 관할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버몰을 규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는 충분한 구분, 경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구매한 물품이 당초라면 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소액의 작은 물품의 경우에 그게 면세가 되면서, 관세 절차를 면세받으면서 어쨌거나 해외에 있는 물건이,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매한 물건이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외국의 사이트, 사이버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운영하는 법인의 문제가 국내에 소재한 법인이나 해외에 소재한 법인이거나보다도 구매를 했을 때 그 물건이 밖에서 들어오느냐, 해외에서 들어오느냐 그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서 정의 규정이라는 게 법률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데 정의 규정 자체에서 일단 불분명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정의 규정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시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송재봉 위원 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해외 직구로 구매할 때 수량의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세관에서, 자가소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자 제품 같은 경우면 1개…… 2개, 3개, 4개를 한꺼번에 통관을 한다면 그것은 통관고유번호라든지 자가소비에 규정될 수 있는 조문, 여러 가지 관련 제도들이 있습니다. 통관고유번호로 전자제품 같으면 1개, 생활용품은 좀 숫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현재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관세법이라든지 관련 법률들에서 자가소비를, 세관이 결국은 자가소비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김한규 위원** 아니, 그것은 면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수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직구를 많이 해 봤는데, 미국에서도 해 보고 중국에서도 해 보고 했는데 일정 금액이 넘으면 세금을 납부하는 거지 몇 개 이상 산다고 해서 자가소비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법적으로.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건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만약에,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데들이 국내에서 소싱을 하고 국내에서 물류창고를 가진 다음에 국내에서 바로 공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상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트집 잡으려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명확하게 정의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런 루프홀을 찾아가서 국내에서 소싱해 가지고 국내에서 공급하니까 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규정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광상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곽상언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의 5호를 보게 되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정의가 있는데 거기는 첫 문장이 이래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의미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4호도 ‘해외의 사이버몰’의 규정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이버몰’로 바꾸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에 최소한 하나의 단어는 통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 범위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의 5호 조항하고의 일관성 차원에서 앞의 ‘해외의 사이버몰’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의 사이버몰’로 수정하자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곽상언 위원** 그게 혹시 법의 취지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제가 김한규 위원님까지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의 취지는 방금 맞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해외에서 통관을 해서 들어오는 개인이 사는 물건 그다음에 국내 소싱하고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인이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국내에 법인이 있으면 저희가 처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 소싱되고 있는 거면 국내에서 처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고 국내에 법인이 없는 경우 그리고 개인이 들여오는 경우—사업자가 들여오는 경우는 수입자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그 경우가 루프홀입니다.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한 입법입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의 규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 안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은 동의를 하셨고 수석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광상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 첨언하자는 이야기인데?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조 4호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 이란’ 그 부분에 말씀 주신 5호에 있는 부분을 포함하면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소위원장 박성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심사할 법률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이나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요점을 갖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쪽입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심의 및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계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협력 및 조정'으로 '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수정의견을 반영한 수정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제가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조정이 법률의 규정에 포함이 되면 나중에 조정조서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될 테고 그다음에 조정의 최종적인 안의 효력을 어디까지 둘 것이나, 강제적 효력을 둘 것이나 말 것이나까지 규정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을 들여다보게 되면 보통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 단순히 협력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게 되면 협력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상관이 없는 데 조정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를 불러 놓고 합의문까지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강제 조정을 하든 임의 조정을 하든 할 텐데 그때 조정의 효력에 대한 규정까지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문언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조정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고 해도 특별한 효력이 없어서 무의미할 것으로 보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조정결정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이 법안에 따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사법 같은 조정 효력의 내용은 없지만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3호에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이 총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의 국조실의 업무가 조정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의견 없으면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4쪽입니다.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 등 확인 시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사이버몰에서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세희 의원안은 권고 또는 명령, 박성민 의원안은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등의 조치 권고·명령에 불복할 경우에 권고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오세희 의원안에서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에는 후속 조치로 삭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해외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명령과 권고의 차이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불이행 시에 불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권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실효성을 제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6쪽입니다.

조문대비표에서 권고한 사실 자체도 공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10조의2 1항에서 제시하였고 1호의 안전성조사는 2호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1호에서만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삭제 등 권고로 일원화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걸 반영한 수정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일단 권고하고 삭제 등 명령하고는 효력상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처분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일단 뒤에 명령이 붙게 되면 그 명령에 불복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따로 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 규정이 규정체계상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권고 수준으로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자 자체가 국내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려도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냥 아예 그런 논의를 차단하려면 뒤의 명령을 삭제하고 경고 수준에 머무르고 그 이후에 공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령을 집어넣으려면 뒤의 규정을 보완하셔야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정부 측 의견입니다. 권고로 일원화하고 그리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원화를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래서 17쪽에 보시면 오세희 의원안의 하단에 3항이 있는데요, 17쪽 하단에서 시작해서 18페이지 가시면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했는데 이 3항을 수정의견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 22쪽.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2쪽입니다.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미지정하거나 지정요건 위반 시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국내 소비자 보호의 충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 조치 권고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3쪽에 보시면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된 입법례가 몇 가지 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지정 시 제재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제출을 해 가지고 현재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박성민 의원 안과 동일하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의 저가 해외통신판매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제품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온라인 판매업체들도 한국까지 직배송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매출액, 소비자 규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직배송하는 물품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 업체에게 한국에 판매하는 매출액 자료를 달라고 해 갖고 기준 이상인지를 체크할 예정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확인할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누가 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법 사례가 시행령에서 매출액 1조 원, 3개월 평균 회원 수 100만 이렇게 보통 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걸 참고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국내대리인을 운영하고 있는 관련 부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공정거래법에도 보면 관련 매출액 이런 용어를 통해서 관련 시장을 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 업체들, 그런 데들의 매출액은 당연히 요건이 넘겠지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 얼마 파는지에 대한 공개된 매출액 자료가 없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선행법이, 원래

정부입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동일한 제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처와 그런 내용을……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공정위에서 올라갔다고 해서 산중위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쪽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 안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산중위 자체에서 검토를 해야지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정 보통신망법이라든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운영을 해서, 현재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있는 여러 개의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예시가 있어야 이것을 통과하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데 법을 일단 통과시켜 놓고, 결국은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을 해 놓고 집행을 하나도 못 한다라고 비판을 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항상 무역마찰이 생겼던 조항이잖아요. 그쪽에서는 ‘못 하겠다. 우리가 한국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 업체만 자꾸 생각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직구도 되게 많다. 그래서 미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잘할 수 있다라고만 해 갖고 어떻게 통과시켜요?

구체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 관련 매출액을 판단할 방법이 있다, 세부적인 기준은 글로벌 매출액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한국 매출액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요건을 정할 거고 이것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통과시킬 수 있지요.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하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라 조금 양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확인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위원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 규모는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23년에 6조 원 정도 됐고 작년에 한 7조 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들을 활용하면 이게 적은 기준이 아니고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아니, 어느 회사 기준인지 자료가 있어야지요. 우리나라 전체 6조, 7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개별 사업자별 통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조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게 전체가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조 원 넘는 회사는…… 저희는 개별 회사가 아니고 판매중개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유수의 중개업자가 몇 개에 불과합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이 법안을, 지금은 이 조항은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뭔가 자료를 갖고 와야 준비기간을 주고 ‘이러면 통과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이게 됐으면 좋

겠는데 실제로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어제 이 법안을 보면서 되게 우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박성민 위원장님이 낸 법안이라 감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라도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런 추상적인 답변으로는 통과 못 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빨리 알아볼 수 있으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아니면 내일 저희가 또 회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 다음번 소위 때 다시 한번 상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상언 위원** 거기에 추가로 저도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예.

○**곽상언 위원** 일단 김한규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지금 국내대리인 지정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국내대리인이 어떤 의무가 있나요?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국내대리인에게 무엇을 할 의무가 있어야 될 테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4쪽에 보시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 이행, 보고……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국내대리인이 무엇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지금 수석님 말씀대로 저희가 삭제 권고를 하면 그것을 이행을 하고……

○**곽상언 위원** 아니, 법률에.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법률에요, 지금 조문에.

○**곽상언 위원** 어디에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4쪽 15조의4입니다.

○**곽상언 위원** 15조의4 1항에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국내대리인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각 호의 사항이기 때문에 1호, 2호의 사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상언 위원** 15조의4 4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이 1항 각 호와 관련해서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국내대리인이 15조의4 1항 각 호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 다음이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의 이행 그다음에 보고, 권고 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이게 권고지 않습니까, 명령이 아니고?

○곽상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한규 위원 제품안전기본법 26조, 27조에 보면 벌칙하고 과태료가 있으니까 해외법인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의 이슈가 되는 거지요. 대상은 되는 거지요. 이 조항을 보면 벌칙하고 과태료 대상은 되네요. 여기에는 없는데 뒤에 법안 26조, 27조에 보고 후 이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별도의 처벌 대상.

○곽상언 위원 그러면 국내대리인 미지정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 원이고 대리인을 지정했으나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김한규 위원 예, 그런 거지요.

○장철민 위원 약간 논리적으로는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 뭐가 없는데 과태료 대상을 뭘로 해요? 국내에 영원히 뭘 안 만들면 과태료도 영원히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 일종의 범인격이든 국세청 등록한 사업자번호든 뭐가 있어야 거기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계속해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그 범인격에 대해서 뭘 주는 건데 영원히 국내에 뭘 안 둬. 그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영원히 특정을 못 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추상적으로는 있는 대상이지만…… 그게 궁금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사실은 공표 부분 쪽이 나와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 해외에 있고 여기에도 없으면 해외에까지 가서 송달해 가지고 내게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국민 공표 기능 쪽을 넣어서 국민들이 ‘여기는 이렇게까지 해도 안 내는 데구나’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지 않거나 구매를 하지 않게 하는 효과를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넣어 놓은 겁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미지정이라고 했다는 것이 언제까지 지정해야 될 의무가 없으면 영원히 미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소위원장 박성민 그런 정도로 하시고.

이 안을 따로 빼서 통과를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속 심사를 할까요? 계속 심사를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오늘 회의 6시까지 할 계획인데 6시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올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6시까지는…… 아까 말씀처럼 해외 직구의 대상이 되는 물 부분 쪽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래서 오늘내일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를 보완해서 다음 소위에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협력을 해 주시면 그 사이에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38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5건도 심사 못하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요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또 너무 집중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전체회의장으로 회의장을 바꾸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28쪽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4건이 있는데요. 우선 28쪽부터 56쪽까지의 박성민·박성훈 의원이 내신 안은 조금 전에 논의하셨던 제품안전기본법처럼 직접구매하는 해외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관련된 조사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에 산자부에서 동일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7쪽부터 62쪽까지 보시면 이것은 13세 이하, 보통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구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점은 지금 이것을 심사하면 다음번 회의 때 산자부에서 제품안전 기본법 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중에 해외에서 직접구매하는 제품 안전성 관련된 의견을 정리해서 올 텐데 그 부분의 심사를 같이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어린이제품 안전법에서 방금 저희가 논란이 됐었던 국내대리인 지정을 중복적으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대리인 지정 부분을 어린이제품 안전법에서는 그냥 아예 들어내고 그 앞에 이미 정리된 부분, 뒤에 교구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서 어린이제품 안전법을 지금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혹시나 내용적으로 대리인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제품 안전법에 따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뒤의 교구 부분은 사실 학교에 있는 교실에서 사용하는 칠판이나 게시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서 이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소위원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그냥 아예 들어내 버리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내용을, 오히려 대리인 지정은 일반법적인 제품..... 앞선 법 쪽에서, 이후 소위에서 정리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우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곽상언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예.

○**곽상언 위원** 제가 법률들을 볼 때마다 참 늘 의아했던 건데요. 지금 이 법률을 보게 되면 어린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만 13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중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구에 대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대한 규정이 지금 다른 법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 다른 법률들의 규정과 통일성을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에도 나이가 있고 형법에도 나이가 있고 각 소년법에도 나이가 있고,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은 보니까 교구인 것으로 봐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학교 재학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연령 규정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검토를 마쳤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에서 13세는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13세를 초과하면 어린이에서 벗어나고, 원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학교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학교에서 쓰는 교구 등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에 일부 중학교 이런 데 겹칠 수도 있는 점이 있지만 초등학교와 유치원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솔직히 다른 법률의 만 나이, 연 나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사실 그것을 검토하셔야 일단 법체계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재학은 사실 만 나이 여부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반에 나이 차이가 두 살 이상 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14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위원님, 기존의 어린이제품 특별법이 다루는 어린이의 정의에서는 그 부분이 만 나이로 정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학교에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 칠판입니다. 그것은 설령 13세 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호할 거냐, 보호할 법익이 있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아니, 크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법을 규정할 때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교구입니다. 그래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재학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거기에 있는 시설들……

○**송재봉 위원**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13세로 하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하면 명확하잖아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사실 지금 그렇게……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그러면 이번에는 대리인은 빼고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따로 재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철민 위원** 재발의가 아니고 제품안전기본법에서 논의해서 그것으로 적용하는 거지요, 어린이제품 안전법에서는 대리인 규정을 따로 하지 않고.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지금 말씀하신 장철민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5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7쪽입니다.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칠판, 게시판 등 교구의 안전기준을 정해서 고시하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필요시에 안전성조사를 통해서 위험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은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일부 초등학교의 칠판, 게시판 등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되는 등 일부 교구는 현행 법체계상 별도의 검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판, 게시판 등 교구의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현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입니다.

58쪽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해서 고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제품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칠판, 게시판 등 제품의 형태가 아닌 교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9쪽입니다.

교구의 범위 관련해서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등의 교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의 심사 시에 교구의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는 필요한 조치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교구 안전기준 설정 범위 등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관계 기관, 교육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57페이지 첫 번째, 법률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신설하자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밑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동법으로 안전관리되고 있는 제품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교구의 안전기준을 고시로 해서 마련하여 신설하자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구’ 규정에다가 말씀드린 ‘어린이가 사용하는 교구’라는 규정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한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저희 산업부에서 이런 구체적 규정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3항에 1·2·3호를 저희들이 추가하는 안을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 규정이라고 하는……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잠깐만요. 지금 서류를 미리 배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서류부터 배포 좀 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위 규정에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하고 관련된 사안이고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구체적 규정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3항에 지금 나누어 드린 안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정부 수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각호 1·2·3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1호는 제1항에 따른 교구가 학교 등에 설치되기 전 해당 교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최초에는 ‘학교 등의 장’이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빼고 제1항에 따른 교구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적절히 유지·관리, 3호는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1·2·3호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만 13세 부분은 원래 어린이제품 안전법에서 포섭하는 범위인 것이고 저희가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보니까 칠판, 게시판 이런 물건들이 사실 조사해 보면 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칠판 하면 사실 학교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딱 어린이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학원에서 쓸 수도 있고 대학에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제품 안전법에서 어린이 안전기준이 적용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를 들면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리하는 데에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따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자부·교육부·환경부 그 어디에도 칠판이나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리를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제품 안전법에 교구 관련된 특례를 만들어서 칠판이나 게시판처럼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을 규율하자라고 해 가지고,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정부부처 간 논의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교육부는 산자부 평계 대고 산자부는 교육부나 환경부 평계 대고 하면서 오랜 기간 부처 협의를 몇 차례, 몇 차례 해서 결론이 이 정부 수정안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 사실 저희 의원실하고 산자부하고 교육부하고 관련 부처 다 모여서 정돈된 안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앞으로는 칠판이나 게시판처럼 아이들 학교 안에 들어가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안전법에 준해서 관리하고 교육부나 이런 데서 조달하거나 할 때 산자부장관이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각호에서 정해 놓은 게 정부안에서 방금 차관이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부처 간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된 안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대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차관이 중간에 학교의 장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일부 검토의견들에서 어쨌든 학교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이 학교의 장들에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문구에 대한 협의가 일부 있었는데 사실 이건 처음에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이후에 그냥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물건이 이 학교 저 학교 많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칠판은 칠판이라서. 그래서 일단 최초에 그냥 제품이 조달되고 설치하는 단계에서 교육부와 산자부가 관련된 역할을 하면 되지 꼭 교장들한테 이 관리책임을 다 넘기는 것은 너무 행정비용이 많이 듦다고 해서 마지막에 다시 수정하느라고 이게 약간 혼란스러웠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학교의 장이라는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굳이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장철민 위원님의 취지가 관철되려면 사실 요건이 적은 것이 좋은데 아까 송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수정안 14조의2 1항을, 1항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면 훨씬 더 간명하기 때문에 어린이에 관한 규정을 빼는 것이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정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단어가 하나 추가가 되면 요건이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굳이 법률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이 위원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그것을 빼 버리자는 것이지요?

○곽상언 위원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까지 빼자는 얘깁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저희가 창작한 문구가 아니라 원래 원법 2조의 정의 규정을 그냥 그대로 써 놓은 거예요.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나중에는 해석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장철민 위원 이게 따로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는 문구는 아닙니다. 사실 바꿔도 안 바꿔도 똑같은……

○박상웅 위원 혹시 초·중·고등학교 우리 교육법체계에 있는 정규 학교 외에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지진아라든지 기타 그런 교육기관도……

○김정호 위원 ‘등’이 들어가니까.

○**박상웅 위원**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등에서’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그 문구를 없애 버리면 나이 조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관계가 없을까, 이런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를 교육 대상자의 나이만이 아니라 그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워낙 요새 다양성이 있는 교육체계가 있으니까.

○**곽상언 위원** 일단 장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다 더 반영하려면 그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어차피 원래 원법에 앞에 정의 규정이 있어서 그게 이 법체계의 규율 범위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넓혀도 원래 이 법 자체, 특별법 자체가 똑같은 것 써 놓은 거라서 이걸로 확대되는 것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정의 규정 자체에 규율 범위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박상웅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학교 관련된 것 위주로 가면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산자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관련사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산자부가 어린이제품 안전법 규율 범위 내에서 교구들도 관리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되어야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도 일단 조달체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일종의 기준을 충족한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설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소위원장 박성민** 장철민 위원님 의견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장철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산업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예, 장 위원님대로 하시지요.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안전기준 고시의 주체가 산자부장관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는 없을 텐데 혹시……

○**김한규 위원** 아니, 교구실에서 선생님들끼리 쓰는 자료까지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해당 안 되어야 되니까 그냥 이건 원안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원이 위원** 장철민 위원님이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하니까 동의하는 걸로……

○**장철민 위원** 사실 고민보다 부처 간 협의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교육부도 하도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게 오래 걸려요.

○**소위원장 박성민** 그다음에 39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9쪽은 직접구매한 해외 어린이제품 삭제 등의 권고 근거를 두는 것으로서 1항, 2항, 조금 전에 논의하셨던 제품안전기본법처럼 해외에서 직접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철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품안전기본법의 개정을 다음번에 차관님께서 좀 더 확인을 하고 내용을 보고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3항·4항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안 담겨도 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지금 3항·4항은 대리인 지정과 관련된 말씀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대리인 지정 포함해서 해외 직접구매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것들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제가 이해하기는 장철민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것은 앞에 있는 법과 달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놔두고, 정의 규정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다른 조항 다 놔두고 거기에서 대리인 지정과 관련된 조항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 다만 5항과 관련된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안대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산업부는 이해를 했고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자료 28쪽에 직접구매 해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은 동의하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앞에 제품안전기본법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동의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다음에 39쪽입니다.

직접구매 해외 어린이제품의 삭제 등 권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있는 사항도 제품안전기본법에서 논의한 내용과 동일하게 동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정부안은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4쪽에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논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3쪽입니다.

직접구매 해외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장감시업무 수행 및 안전정보 수집·관리하는 내용을 산자부장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내용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다음에 57쪽부터 있는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은 지금 장철민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교구 관련해서 14조의2에 정부 수정의견으로 배포한 자료는 배포한 자료 그대로 우선은 정부 측에서 원한다는 의견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꽤 위원님이 주셨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마지막 부칙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 부칙은 다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것 없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2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시기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측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준비하는 것들이 기간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공포 후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은 그것 반영해서 우선 1년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63쪽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규제 정의 및 특례 등 부여 시 국가·지자체의 협조 의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을 준용해서 규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여 과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규제 적용 예외 또는 허가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규제의 명시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특례 대상 중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비협조하는 경우 사업 개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규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규제 적용 예외 또는 허가의무를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언 위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를 정의한 것이 저는 매우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말한다’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에 따른 규제의 정의가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개념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규정을 둘 이유가 있는지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세 번째, 만약에 이런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면 지금 이 특별법인 산업융합촉진법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쭤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규제기본법에는 행정규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곽상언 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반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규제에 관한 정의는 그대로 계승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실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에 왕왕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협조를 잘 안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가지고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하거나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실행할 의무가 있음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일단 그러한 취지라면 사실 모든 법률이 다 일반법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을 한 다음에 특별한 규정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법만 다시 동일한 내용을 또 반복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 규제의 정의 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일견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법이 특별법으로서 좀 가까운 법이다, 실행에. 그러나 보니까 저희 법을 가지고 지자체를 설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희 법에 실질적으로 규정이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규제특례사업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저희 법에 한 번 더 규정을 해서 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곽상언 위원** 좋아요. 그런 취지라면 산업부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 다 포함시켜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산업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 규제 정의를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는 왜 안 집어넣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일단 저희가 특별하게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리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의 예외를 두고자 하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행정규제나 행정처분이…… 모든 법들이 사실은 침익적인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한 번 더 차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실무적인 필요성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시잖아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일단 법률 규정도 안 맞고 균형도 안 맞고 이게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 이 법을 집행할 때 체계는 안 맞지만 필요상 집어넣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 보인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그러한 이유라면 산업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 전부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규제란’에서 즉 ‘것으로서’까지를 빼고 ‘규제란 행정규제법 제2조 1항제1호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말한다’라고 바꿔 넣는 게 더 법체계나 또 법조문의 간소화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관님, 이 법률이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안도 제출됐고 김정호 선배님도 제출하고 또 한무경 의원안도 제출됐는데 그때는 통과가 안 됐는데 심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위까지 가지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아예 심사 자체를 못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질의가 없으면 6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규정입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 또는 산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

업부 차관급 공무원도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상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산업부차관은 동 위원회 위원이 아닌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6쪽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도 현행과 같이 위원장이 정한 위원회 내 위원이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을 반영한 수정에 동의, 현행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6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사업자 중심의 특례 및 편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해서 기존과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 시에 관계기관 검토 결과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있고 이때 전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중에서 동일·유사한 과제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정안은 기승인된 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68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서 8조는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을 정부안대로 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관련해서는 규제특례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에 따른 것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의견은 고동진 의원안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7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관련 법령의 미정비 시에는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관련 신사업 등 장기간의 실증이 필요한 과제에 있어서는 유효기간 2년 등이 부족해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은석 의원안은 유효기간을 실증특례 4년, 임시허가는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실증특례와 동일하게 2년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입니다.

고동진 의원안의 경우에 유효기간을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 신제품·서비스의 내용이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증특례의 경우에는 4년,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과제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확대하게 되면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게 일부 지연될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추가로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75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고동진 의원안으로 하자라고 하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효기간을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그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정의 기준은 삽입을 해 두어야 그다음에 다시 연장할 수 있을 때 판단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법안의 내용, 75쪽을 보시면—고동진 의원안입니다—10조의3 11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다만, 위원회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77쪽에도 보시면 10조의6(임시허가) 10항에서 단서규정에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곽상언 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최초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때의 요건과 예외기간을 연장할 때의 요건이 사실상 같은지 아니면 추가되는 요건이 있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장철민 위원 저는 그냥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게 동일한지 유사한지가 어떤 식으로 확인되는지……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일하면 사실은 복잡한 절차가 당연히 필요 없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체크되는 거지요, 동일·유사성 여부가? 신청자가 이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 기준에 있었다라고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받아 보고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위원님, 신청하는 사람은 이게 동일한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하시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유사 사업을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로 하고 있는 경우 본인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공유미용실 이런 경우 굉장히 유사한 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완견을 동반하는 식당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형태가 동일한 것들이, 그러니까 실증을 하더라도 그 내용과 허가 내용이 똑같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일한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런 유사 과제가 되지가 않는, 그것은 다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 절차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관계기관에 이미 보내는 단계부터 이게 패스트트랙이다 아니다라는 게 명확히 돼야 관계기관들도 이것은 15일 이내에 줘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것은 30일의 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기준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냈던 것과 동일·유사한 과제라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 단계가 유선이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상호가 합의하는 하에서 이것은 동일 과제다, 추가적으로 실증특례나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협의를 한 후에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물론 장철민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게 결국 신청인들한테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유사하게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재량을 갖고 더 기간을 단축하게 해 주는 거라, 지금 단계에서 법의 규정이 아주 명확해서 정부 재량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현재대로하고 그 대신에 정부가, 그래도 유사한 경우에 왜 나는 패스트트랙 안 해 주느냐라는 불만이 또 제기될 수 있으니 최소한 행정규칙 정도라도, 법에 위임이 안 되더라도 시행될 때까지 자체적으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안 자체는 이렇게 통과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1쪽입니다.

허가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유효기간 연장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비된 규제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개정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결정 시까지 특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특례 부여 후에 관련 규제법령 정비 시 특례 사업자는 자체 없이 새로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특례는 종료되고 별도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 전이거나 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사업 요건의 취득 여부 결정 시까지 특례사업 유효기간을 인정하고 연장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82쪽, 83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4쪽입니다.

실증특례·임시허가 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취소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사정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의 소명 서면 제출로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 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부여 후에 그 내용 및 부가조건에 대한 변경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특례의 내용 및 부가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권한을 명문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취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 86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7쪽입니다.

실증특례 등의 취소사유 추가 및 제품의 회수·폐기명령 등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미개시하거나 거짓·과장·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실증특례·임시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실증특례·임시허가의 취소·시정명령 사유 발생 시 기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명령 그리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유사 입법례인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유사하게 담고 있습니다. 88쪽의 입법례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쪽부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90쪽에 수정의견으로 현행에는 취소된 경우에만 신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취소되거나 종료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94쪽입니다.

사업 성과보고서의 제출 등입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 개시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관련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행법에 성과관리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의 취지입니다.

95쪽입니다.

다만 기한 내 제출하는 횟수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96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7쪽에도 입법례를 참고해서 하단에 동일하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일준 위원** 국장님, 지금 산업부나 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의 등에서 기업 방문해 가지고 성과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 실적을 저희 의원실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상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2년의 시간이면 매우 긴 시간인데, 국회의원 임기 절반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사업 종료된 다음에 2년이나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저희가 R&D도 동시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R&D 같은 경우도 종료 후에 5년까지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5년이면 대통령 임기하고 똑같고요. 이게 매우 긴 기간인데, 혹시 사업 기간이 몇 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다른 입법례도 그렇게 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다른 입법례 말고, 혹시 사업 기간이 몇 년인데 사업 종료 후에 2년이나 주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사업 기간은 보통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기본적으로 2년을 주고 있고요.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요. 2년이 사업 기간인데 그다음 사업 종료 후에 2년이나 또 준다고요? 아주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제 생각입니다만 R&D를 하고 나서 보통 1년 만에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1년, 2년 정도 숙성이 좀 더 돼서 그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간이 무한정 길어진다

고 해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보면 2년, 5년 이렇게 하는 게 R&D 부분의 성과가 몇 년 정도 지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성과가 좋다 또는 2년까지 해도 성과가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숙성 기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2년 정도를 주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보고서는 사업 기간 만료까지의 사업 성과를 쓰는 것이지 사업 기간 만료 이후의 사업 성과까지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사업 기간 이후에 이 R&D 성과까지 2년을 고려해서 사업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기간을 2년이나 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이게 기존 사업을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신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은 신시장이 정말 창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로서 정착이 되는지 그리고 기술이 정말 정착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의 기간이라든지…… 6개월은 사실 저희도 R&D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2년 정도 이 시장이 확산되는 형태를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들에게 유용한 틀로 자리 잡는지를 저희가 추적·관찰을 계속 함으로써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의 피드백으로 좀 삼고자 하는데 6개월이나 1년이면 사실 개화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상점 같은 것을 새로 열더라도 처음 시점하고 1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2년 정도 안정이 된 시점은 다른 양상이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법조문에 보면 사업 기간이 아니라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이라고, 오히려 실증을 했으니까 실증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한 2년간 까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규제특례사업의 성과보고서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실증특례나 규제샌드박스 부분들을 임시허가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샘플로 했으니까 실제 그 후에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제가 볼 때 밑에 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종료 후 5년까지 매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과 같은 취지인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2년이지만 그게 6개월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성과 보고를 내게 해서 2년까지 한다 이런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에 실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9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기술금융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금융 등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산업융합형 과제 추진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만 있는데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직접적인 관련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 및 기술금융, 판로의 확보 등 사업화 비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00쪽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01쪽입니다.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의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동진 의원안은 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은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 자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실증특례는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 판단 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고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법령 정비에 착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검토 작업만 되고 실제 법령 정비가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동진 의원안은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102쪽의 입법례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03쪽부터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104쪽 상단의 고동진 의원안의 경우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정부입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력’ 자는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105쪽에도 수정의견을 동일하게 의원 입법도 가능한 내용을 반영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06쪽입니다.

실증특례·임시허가 사업 기획·공모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특례사업을 기획·공모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만 특례 여부 및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부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규제개선 사항을 전략적으로 발굴·제안해서 실증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07쪽부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상언 위원 지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시요?

○곽상언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의원 입법……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04쪽 말씀하십니까?

○곽상언 위원 예. 104쪽, 105쪽인데요.

그러니까 고동진 의원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 단서에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수정의견은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거기서 노력은 빼는 걸로 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 개정 취지가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까지 포함하기 위하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 입법만을 하는 것이고 의원 입법은 법률의 규정으로 강제하거나 감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첫째.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을 이렇게 불분명하게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없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초 의견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고동진 의원안 원안대로?

○곽상언 위원 예.

○소위원장 박성민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렇습니까?

정부 측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09쪽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압류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배상책임, 책임보험 가입 의무, 피해자 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수급계좌 신설 및 손해배상금 압류 금지 조문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양도나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부에서 관련 입법례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개정안이 각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11쪽은 법제처에서 발표했던 손해배상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위한 규제특례 관계법률 정비계획을 참고로 넣어 드렸습니다.

112쪽은 정보통신 진흥 활성화법 개정안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개정안의 내용을 우선 반영해서 113쪽, 114쪽, 115쪽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6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포상 및 면책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처리 그다음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징계·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이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의 면책 특례와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부칙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9쪽입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고동진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정부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준비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월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 없는 적극행정 면책이나 포상규정 등은 공포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례의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12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심사자료 2권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올해 11월 23일로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또는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그리고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제를 일몰제로 도입하였고 5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을 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규제조항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유통이나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유통규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대형유통 등의 경우에는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쪽입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정부가 효력 상실일 6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 필요성,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몰규정 연장 여부에 대한 국회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윤준병·오세희 의원안이 공포한 날부터, 김성원 의원안은 규제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25년 11월 24일부터 일부 폐지하는 경우에 존속기한 만료일 다음날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김성원 의원안대로 할 때 관련된 용어의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5쪽은 개정안에 대한 관련 협회의 의견을 참고로 넣어 드렸습니다. 맨 위의 한국체인 스토어협회에서는 준대규모점포에 관련해서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쪽, 7쪽의 참고 조문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쪽부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9쪽의 비교란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부는 효력 상실 3개월 전에 영향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정부 쪽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우선 연장 여부에 대해서 산업부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종합분석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효력 상실일 3개월 전으로 수정하자는 정부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 2010년에 일몰제로 해서 5년 단위로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일몰제로 한 이유 그다음에 일몰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백하게 짚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몰 연장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일몰을 더 연장할 것이라고 하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정부 측에서도 당연히 공감하고 동의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중소유통이나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되어 있는 이러한 등록규제나 영업규제 부분이 현재의 경기불황이나 소상공인 폐업률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바로 일몰을 하기보다는 최소한 이번에는 일몰을 연장하여 다음번 일몰 기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경기나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등을 그때 한 번 더 판단하는 게 소상공인 정책적 차원에서 또는 유통산업 전체의 측면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정부 측의 판단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너무 막연한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시기에 이것이 일몰이 될 것이냐 이런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경기 문제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의 상황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수로 판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너무 막연한 걸 일몰제로 해야 되는 건지……

아예 그냥 법에 일몰제를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들어도 판단을 하기가 애매한 답변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 측에서 너무 막연한 것 같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

물제 5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은 좀 가지고 입법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원이 위원** 이종배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상거래 자체가 온라인이 확산되면서 규제 도입을…… 이게 최초에 몇 년이지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2010년입니다.

○**김원이 위원** 10년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15년 전 아닙니까? 이 환경이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굉장히 상승 국면이었다면 지금은 하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유통 과정의 변화 이런 것은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산업연구원에서 분석자료가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실증분석한 내용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열핏 예전에 듣기로는 최근 5년 내에 출점한 대형마트 그다음에 SSM 17개 주변상권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산업연구원에서 25년 8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 김태희** 위원님,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입니다.

이번에 일몰되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산업연구원 통해서 SSM과 대형마트 관련해서 출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런 자료들을 이 법안 논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했으면 좀 더…… 이종배 위원님이 지금 그걸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그래서 이 법을 이제는 한번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니까 저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이종배 위원님한테, 위원님들한테 미리 제공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실증분석이 어떻게 나왔나요?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 김태희** 일단 실증분석은 전반적으로 대형마트 출점과 관련해서 주변상권의 영향은 주변에 대체관계가 높은 농수산 등 도소매업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다만 전통시장 매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 SSM의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도소매업 등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어쨌든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규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 김태희** 아닙니다.

○**김원이 위원** 거꾸로?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 김태희** 예.

○**김원이 위원** 오히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리고 도소매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분석 결과라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종배 위원님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종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잖아요.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평가할 때가 되었다 이런 취지니까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가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서일준 위원**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통시장 자생 강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마련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을 부탁드리고.

지금 오프라인 업체는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온라인 업체는 규제 안 하잖아요. 온라인 업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온라인 업체 부분에 대한 규제 문제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 쪽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 부분이 특정하기가 쉽고 또는 여기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도소매업체나 전통시장 쪽의 연관성을 우리가 특정해서 검토하거나 또는 규제하는 게 가능합니다만 온라인 쪽이 되면 업체는 온라인 대상으로 특정이 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구매활동이 이루어지고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지, 그 부분이 현재는 온플법이라든지 하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 있고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서의 소상공인이나 도소매업자들, 전통시장 쪽으로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접근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오프라인 상권은 전통시장이다 대형마트다 관계없이 온라인 상권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권이 거의 없어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게 살아날 수 있다 해 가지고 시작된 건데 지금은 오프라인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어요. 로드숍이 지금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온라인 유통 때문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그다음 상가가 공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온라인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은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특정하기 힘들고 규제하기 힘들어서 못 한다라는 것은 좀 책임을, 과거 이 법의 정신으로 본다면 책임을 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말씀해 주신 자생력 강화 방안 쪽에 온라인 플랫폼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공정위하고도 같이 협업하는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권 전체가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연구된 자료를 저에게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된 건 대형마트가 들어온 것이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신 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를 들면 망원시장 옆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 망원시장이 살아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였는데 연구결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주셔서 그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장에 기반해서도 의견을 취합해 볼 필

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이 법안을 반대하기가 참 어려운데, 소비자 입장에서 항상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불편함 측면에서의 조사 같은 건 있으셨나라는 궁금함은 있어요.

SSM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새벽배송 같은 걸 못 하는 거잖아요, 영업시간 규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새벽배송 같은 게 되는데, SSM이라는 게 꼭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체인 형태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 측면도 하나 있는 데다가, 문제는 그것보다 저는 소비자 기준으로 2010년 이후에 소비자들이 이 부분의 불편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자료들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 김태희** 위원님, 이번에 산업연구원 통해서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 효과 분석을 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대형마트가 휴업일 경우에 어떤 대체 쇼핑을 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한 지가 째 오래되니까 나름의 쇼핑 패턴이 전날에 미리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쇼핑을 하는 경우로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는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대형마트가 휴업일 경우에 전날에 쇼핑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생활에 있어 가지고 자기네 각자의 쇼핑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규 위원** SSM은 전통상업보존지역에서 1km 이내에 입점이 안 되는 건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 정해 놨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그것도 다 적응이 된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S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고 소비자들이 익숙해서 이거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일몰법안으로 할 필요가 있나, 아예 일몰규정 자체를 없애도 되는 것 아닌가, 왜 책임을 계속 우리가 미루고 5년 후에 다시 평가, 5년 후에 다시 평가하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김성원 의원안은 3년이고 다른 의원안은 5년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3년과 5년 중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가 않아요. 차라리 일몰을 언젠가는 아예 없애는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정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이 부분이 항상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문제 쪽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게 대형점포 또는 대기업 부분과 반대편에 있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 쪽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또는 소비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각각의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부분 쪽에서의 이해관계 충돌과 주장들이 항상 달랐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일몰조항이 들어가고 그 일몰조항들에서 됐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일정 시점 지났을 때 상황의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지금 현재도 3개 부분, 소비자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두 쪽의 사업자 부분들의 의견은 여전히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일몰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지금 담당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소비자의 행태나 소비자의 소비구조에 있어서 익숙해가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부분이 확정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일몰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연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산업부의 의견입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차관이 3년 뒤에 또 차관으로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연장하고서 최소한 3년, 5년 뒤에 해 보자, 그때 가서 제대로 검토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자신 없는 얘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전통시장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 그 기준을 한번 잘 만들어 보면 좋겠다, 용역도 해 보고 전반적으로 온라인의 영향은 어떤지 또 대규모점포의 영향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나눠서 구분해 가지고 분석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것이 산업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기부 또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같이 회의도 하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3년 정도 연장을 하는 김성원 의원안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원이 위원 기왕 쓰시는 것 2년만 더 쓰시지요.

○송재봉 위원 그동안 5년으로 해 왔던 건데 굳이 3년으로 줄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몰제로 정해 놓은 것은 언젠가는 이 기간을 없애겠다는 이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변했고 또 사실은 대형마트가 과거처럼 직접적으로 재래시장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이것을 법으로 소비자의 선택권리를 계속 이렇게 강제를 할 건가,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언젠가는 일몰제가 그야말로 일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산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대형마트가 만만하니까 계속 법으로 규제도 하고 있지만 지자체 가면 지자체에서 또 규제를 하고 있어요. 또 지자체에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금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형마트 입장으로 보면 자기네들도 적자를 보면서 기금은 계속 내야 되는, 그런 가운데 휴일은 또 강제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이중 삼중의,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고.

물론 재래시장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마는 5년, 3년 그 부분도 조금 그렇고, 이게 또 5년을 하면 결국에는 다음에 또 5년 연장할 거다 이렇게 해서 긴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다음에는 이게 정말 일몰이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경각심이나 긴장감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기간에 대

한 조정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이 위원 저도 그 말씀 동의해서 3년하고 5년 사이의 4년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성민 우리 3선 의원님.

○김정호 위원 일단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전통상업보존에 대해서 3년이냐 5년이냐, 두 번째는 김성원 의원안은 SSM에 대해서 아예 이번에 연장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우선 SSM에 대해서는—아까 유통물류과장님이셨습니까—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도소매업에 다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이 문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위협적 요소이기 때문에 연장은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기나 상황이 전체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 동향의, 소비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여전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일몰제를 폐지해야 되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보호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쿠폰도 내고 지역사랑상품권도 계속, 특히 지방의 지역상권·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언젠가는 해야 될 건데 일몰제 기간을 축소하거나 대상을 축소하자고 하는 게……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윤준병·오세희 의원 안처럼 다 연장하고 그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일몰제가 변함없이 계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 이번에 한 번 더 합시다, 일단.

○소위원장 박성민 지난번에도 아마 그랬겠지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 3선 의원님이 아시겠지, 5년 전에.

○이종배 위원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랬겠지요.

○김원이 위원 그러면 제가 조정안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긴장감도 주는 게 맞으니까 둘 다 1년씩 줄여서 4년·4년 연장하든지 아니면 SSM은 더 안 좋은 영향이니까 그것은 5년으로 하고 대형마트 이것은 3년·5년으로 하든지 이런 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어떻게 할까요?

○김원이 위원 그냥 4년·4년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성민 4년·4년 할까요?

○김원이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성민 약간은 변화를 줘야 그분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김한규 위원 저도 4년을 하면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이라 그때쯤에 한번 책임지고 이 정부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아예 일몰을 없앨 건지 아니면 일몰제 없이 이 제도를 폐지할 건지 책임지고 우리 정부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말씀해 주신 4년·4년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제가 잠깐 화장실만……

○**소위원장 박성민** 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25쪽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체계화를 위해서 사업자 신고제도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26쪽입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 수주 사실의 변경, 준공된 경우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사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주실적 통보체계는 각 엔지니어링 분야별 소관 법률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는 임의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수주실적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엔지니어링사업에서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추가적인 신고 부담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은 전체 사업자 비중의 50%가 조금 넘고 수주액 기준으로는 60% 이상입니다. 또 개정안 제8조제3항에 따라서 산업부장관이 조달청장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 계약현황 정보를 제공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두는 것과도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8쪽입니다.

엔지니어링 분야별 업체 수 그리고 수주실적 등의 현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쪽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규제거든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앞으로……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자리에서 이런 신고가 왜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등록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라 하더라도 사업자에게는 규제적인 효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 문제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측면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더 클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비교 형량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현재 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공부문에 대한 발주 쪽에서 수주를 해서 수·발주의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거나 갖고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엔지니어링협회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 따라서 이 엔지니어링사업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정책을 하고자 할 때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돼서, 육성 방안이라든지 또는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 통계부터가 시작돼야 되는데 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발주에 대한 통계 현황마저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 부분 쪽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클릭을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자동으로 수·발주 실적이 집계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고안을 하고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에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더 이 사업자들 육성정책이나 다양한 시책을 저희 정부 쪽 입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신고 의무이기는 합니다만 그에 따른 통계와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게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이종배 위원**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데이터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해서 관리하고 그걸 정책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샘플 조사하는 것도 있고 KIAT 같은 데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이해가 잘 안 가고, 협회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제도적인 보완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개별 사업자들이 전부 다 수주할 때마다 신고를 하게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할 때는 좀 없던 것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없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이게 발주청이 공공기관만 발주

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빨주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너무 지나친 규제 아닌가, 새로운 규제를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0쪽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 계약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사업 계약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엔지니어링협회와 조달청 간의 실무상 협의를 통해서 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 정보를 확인 중으로 실무 절차를 법에 명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2쪽입니다.

엔지니어링 데이터플랫폼 운영과 관련돼서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활동 관련 데이터 연계·융합·분석·제공을 위한 엔지니어링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에 근거를 두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플랫폼 운영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현행법 8조에 따라서 산업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를 운영 중이고 또 산업부는 2021년부터 3년간 국비 236억 원을 투자해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완료해서 운영 중입니다.

33쪽입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과 현행법에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가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이 운영 중이고 또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운영해 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쪽을 활용해서 AI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사업자들을 위해서 확실히 확대 운영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좀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6쪽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중요사항 변경·휴업·폐업 등에 따른 신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변동 등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휴업·폐업의 경우에는 후속조치가 불필요하고 사실관계 조기 확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7페이지에 휴업·폐업의 경우 30일 이내로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8쪽입니다.

신고 수리 간주 제도의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중요사항 변경·휴업·폐업 신고와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후에 산업부장관이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사업의 영업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경과 시에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39쪽의 수정의견은 건설엔지니어링업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수리한 것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 신고하면 그냥 당연히 받으면 되지 수리가 필요한가요? 이게 수리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려를 시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재준 산업부 담당 과장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사업자는 불확실성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과하면 수리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한테 유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런데 반려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당연히 신고하면 그냥 신고로 끝내야지 15일 지나면 수리한 것으로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뜻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재준** 휴·폐업 신고라든가 지위승계 신고에는 신고 때 적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적 내용을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수리 간주로 보자는 것이 이 법문의 취지입니다.

○**이종배 위원** 종전 모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기관에서는 신고하면 그걸 수리해야지 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신고하면 그냥 신고로 끝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이. 우리 행정기관 위주로 하지 말고 신고자 위주로, 사업자 위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신고하면 수리를 한다고 수리 통지를 하고 이런 일거리들을 좀 줄여야 되지요. 그냥 신고하면 신고 대장에다 넣고 이상이 있을 때만, 거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경우에만 체크를 해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신고로 마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수리 통지를 해야 되겠는데 꼭 필요한지 여부를 잘 몰라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1쪽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나 출입조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신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권과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실, 사업장 외 ‘그 밖에 필요한 장소’의 불명확한 부분을 42쪽에 ‘사무실, 사업장 등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로 표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3페이지입니다.

처분절차 진행 중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인 자의 폐업신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 상실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절차 진행 기간 중에, 영업정지 중인 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처분절차 진행 중인 자에게 폐업신고를 협용하면 처분절차 확정 전에 폐업 후 다시 바로 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폐업신고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인 자는 확정된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만 개업이 가능하므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4쪽에 영업정지 기간 중인 자는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5쪽입니다.

양수·상속·합병 시 행정처분 효과 승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의 양도, 사망 또는 법인 합병 등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법령은 일반적인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따른 효과가 1년간 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효과 승계(1년)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자 지위 승계 시 처분 여부의 확인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양수인·상속인·합병법인 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선의인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 후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상속인을 선의의 양수인 등에 포함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은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에서 상속인을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47쪽에 25조 1항 이하의 수정의견에서 양수인 등에서 상속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8쪽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간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 소속 엔지니어링기술자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영업신고 시 사업자 신고는 의무사항인데 기술자 신고는 임의사항입니다. 본인 신고·간주신고 중복으로 인한 혼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고간주제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9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0쪽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 표준품셈의 근거와 관련돼서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에 표준품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필요한 기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업 대가 산정을 위한 필수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명문으로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51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2쪽입니다.

발주청 대가 산출내역 공개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발주청의 입찰 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산업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고시하는데 구체적인 개별 물량과 단가를 적용하여 도출하는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구체적인 개별 물량과 단가 등을 적용해서 산출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예산편성 단계와 입찰공고 단계에서 서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3쪽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관 간의 가액산정기준과 관련된 이견이 있으므로 이견 해소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우선은 임의규정으로 도입을 하면서 향후에 여건이 성숙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54쪽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이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공사비는 산출내역의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런데 기술용역의 대가잖아요. 예를 들어 설계·시공·감리 이런 기술용역의 사업 대가도 사실은 산출내역이 공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 취지에는 동감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김원이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세니까 임의규정으로 먼저 해 보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김원이 위원** 얘기를 좀 더 해 볼게요.

현재 조달청을 이용해서 입찰하는 기관이 약 254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 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산출내역을 공개한 기관이 633개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조달청을 통해서 거래된 전체 내역을 보면 4만 9572건인데 그중에 5428건만 공개돼 있답니다. 공개율이 약 10% 정도지요. 이런 상황에

서 임의규정으로 두면 이게 들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근본 취지, 기술용역의 대가도, 즉 설계·시공·감리 등 이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도 공개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임의규정으로 하면 이게 나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공개율이 10.9% 정도인데 이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대가 부분의 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측면에서 임의규정으로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김에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차관님의 정책목표를 훨씬 용이하고 분명하게 이를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임의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5년 해 봤는데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5년 동안의 혼란이나……

임의규정으로 하고 향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 평가기준을 정해서 몇 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사업 실적을 평가한 후에 몇 년에는 실시한다 이런 것도 없는 채 그냥 선의에 기대서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본적 도덕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10.9%가 이것을 했을 때 26년에는 몇 %로 나아질 거고 27년 정도에는 몇 %로 나아질 거고 30년에는 60% 이상 동참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런 근거가 있어요? 그냥 선의에 기대겠다는 것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정책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번 기회에…… 이것도 일종의 규제가 만들어지는 건데 안전성 확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맞는 규제잖아요. 사업자들의 약간의 불편함일 텐데, 아까 차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들어가는 수고에 비해서 공공의 이익이 크므로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가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질의……

그런데 김원이 위원님께서는 이게 불편해진다고 하는데 발주청이 공개하는 거니까 입찰 참가자들은 불편해지는 게 없는 것 아닌가요?

○**김원이 위원** 맞아요,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혁성무 의원이 낸 개정안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바꾸신 과정에서 혹시 혁성무 의원님하고 상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것은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이것 누구랑…… 산업부 의견 듣고 바꾸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의원님 법안의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바꾸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단하신 데?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3쪽에 조달청의 의견을 간략하게 써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가액산정기준 바로 위에 있는 표에서 조달청에서 하는 단가하고 기재부에서 실제 예산에 적용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의무화할 때 그 차이가,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율하는 것을 논의해야지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면 캡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이것은 엔지니어링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주청의 문제라서 공개하도록 해도 업계의 불편함이 없을 텐데 굳이 기재부하고 산자부하고 무슨 요율 적용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법안을 바꾼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권향업 위원** 거기 보면 기재부지침요율하고 산업부고시요율이 54~151%로 큰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에 기인해서 기재부와 산자부의 요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산업부차관님, 산업부와 기재부의 요율이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재준** 저희 산업부 법에 따르면 저희가 대가기준을 산출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품셈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가를 만들고 그래서 공사에 들어가는 요율, 요율이라 함은 전체 공사비에서 설계·감리 쪽이 몇 %를 차지하는지를 정해 놓는 건데 저희는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요율표를 작성해 놓은 반면에 기재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같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 공사에서 차지하는 요금의 비율을 낮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편성지침은 현실보다 좀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일부 높은 부분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산업부고시요율이 분모 그다음에 기재부지침요율이 분자인데 저희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재부지침요율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퍼런 부분은 ‘현실보다 덜 받는구나’ 그다음에 빨간 부분은 ‘현실보다 더 책정이 돼 있구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들이 기재부의 예산 제약 때문에 받아야 될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향업 위원** 그런데 이것을 평균 표준요율 정도라도 해 가지고 기재부와 산자부의 표준요율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큰 차이로……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재준** 양 부처가 합의해 가지고 단일안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수년간 진행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각 부처가 자기 입장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협의할 부분이고 법에는 이미 현행법상도 31조 2항에 따라서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 단계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재준**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 대가 산정기준하고 가격 내용 정해서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 이미 지금 산업부가 고시하게 되어 있고 고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랑 다른 것은 향후 고시 기준을 바꿀 때 고민하실 부분이고 어떤 기준

이건 여하튼 업체를 정할 때 어떻게 산정했는지 기준을 언급을 해서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저는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원래의 개정안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하는 안에 대해서 산업부는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그냥 통과시키려고?

○**소위원장 박성민** 아니요, 또 보고를 해야지요. 또 다른 것 받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지요.

○**이종배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5쪽입니다.

수수료와 과태료 정비 관련해서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사업신고·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등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기술자의 경우에는 기술경력증 발급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사업자의 경우 사업수주실적확인서 발급 시 또 기술자의 경우에는 신고·변경신고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지위취득과 사설증명에 상응하는 수수료 부과로 보입니다.

다음, 과태료 정비와 관련해서 폐업 미신고 시에 과태료 100만 원을 폐지하는 내용인데 현재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산업부가 국세청 신고내역을 반영해서 직권 말소 중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실익이 적어서 폐지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료제출요구, 실태조사 불응 관련해서는 과태료 100만 원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유사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절해 보입니다.

56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아까 발주청 대가 산출내역 공개 관련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종배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26쪽에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주, 수주사실 변경, 준공 상황을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국토부 의견 들으셨나요, 누가? 여기 수석님이라든지 또는 산업부에서 국토부 의견 좀 들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재준** 국토부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간접적으로 각 부처의 양 협회, 저희 쪽은 엔지니어링협회,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협회의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본 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신고의무 주체가 발주청이고, 건설기업들이 발주청으로 보내고 발주청에서 국토부장관한테 보내는 시스템인데 실제 누락되는 신고 내

용이 많아 가지고 조달청 등 전체 DB를 관리하는 기관들과 협의해 본 결과 이것이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다, 직접 엔지니어링사업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다이렉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엔지니어링사업자한테 직접 받으면 빠지는 경우가 없이 모두 다 신고가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재준** 일단 신고의무 부과 대상으로 해 놓을 경우에는, 물론 일일이 저희가 모든 건수를 완벽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된 형태의 신고 DB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실제 사업자들의 의무로는 되어 있지만 신고하는 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한 이삼 분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미 처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신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자보다 좀 더 많은 엔지니어링사업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업자들한테도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조달청이나 국토부와 정보 공개 등을 통해서 부처 간의 협력도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전체의 50% 혹은 50% 이상 되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재준**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발주청으로부터 이런 수주 실적들을 받고 있잖아요. 발주청으로부터 받고 있고 또 산업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받고 그러면 이게 이중이 되고 또 이 통계도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누구로부터 하나로 이렇게 받아야지, 그리고 그 통계를, 정보를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국토부에서는 발주청으로부터 받고 산업부에서는 사업자로부터 받고 이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중복 규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맞지 않는 통계를 가지고 서로 이것을 정책에 활용을 하는 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정부 간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그리고 한쪽에서 받아 가지고 한쪽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꼭 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강화하는,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이런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아까 제31조의 위원님들 질문에 ‘공개하여야 한다’도 정부 측에서는 동의한다 이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말씀을 제가 우선 깊이 새겨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 부분은 결국은 사업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규제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 이 전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을 했을 때 오히려 전체 사업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시책을 마련하는 데 가장 출발점이면서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 쪽은 저희들이 이 통계의 개인들에게 대한 자료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자료 보호의 문제, 데이터의 유출 문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또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전체의 통계를

갖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말로 해서 뭐 보안이 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보안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같은 정부에서 신고를 받는데 하나는 발주청으로부터 받고 하나는 사업자로부터 받으면서 다른 통계를 이용하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세요.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반대를 하는데 국토부하고 협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협의를 하셔야지요, 국토부하고. 지금까지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관리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을 국토부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산업부에서 관리하겠다, 당신들은 발주청 자료 가지고 운영하라, 우리는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 따르겠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의 건설엔지니어링협회하고는 하기는 했지만 말씀처럼 부처 대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다음번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국토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의제기를 하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렇게 협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이 위원** 잠깐만, 계류하자는 의견입니까? 저는 차라리 그러면 이 조항은 삭제하고, 그냥 현행 규정대로 두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낫지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것을 한 다음에 어떤 다른 분이 개정안을 내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그렇게 해도 양해가 되겠지요?

○**이종배 위원**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김원이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이 조항은 그냥 현행대로 내버려두고, 다른 개정안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처리가 됐는데 그 하나 때문에 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예, 그러면 7조의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제16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위 심사자료 3권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의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우수한 기술의 신기술 인증과 우수한 제품의 신제품 인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의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월 인증규제 정비방안에 따라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뒤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체적인 내용이 변경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 이게 실제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왜 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저도 어제 똑같은 질문을 실무자한테 했었는데요. 정부 내 국조실에서 인증이라고 하는 취지에 입각을 했을 때—이게 즉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했답니다—그 부분에 있어서 인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인증에서 빼고 다른 것으로 취해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게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련 법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저희 산업부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의 일환입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 바꾸는 것인데 국민들한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을 이렇게…… 법안들을 몇 개나 바꾸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법안들도 바뀌고 있습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전용길**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전용길입니다.

당초에 인증이라고 하면 품질이나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김한규 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실의도 없는 것을 다른 법률도 다 바꾸고 있느냐고요, 실제로? 바뀐 게 있습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전용길** 총 189건이고요. 지금 관련 부처에서 개정을…… 그 현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굳이 반대할 것은 아닌데 무의미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같아서 확인했는데 하여튼 현황이 확인 안 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1호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저도 김한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인증이라는 이 의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것으로 신뢰 기반의 제도로 받아들였는데 지정이라고 한다면 신뢰 이런 게 오히려 더 하락되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전용길**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인증이라는 용어를 쓰

던 관행대로 인증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국조실에서 용어의 정비 차원에서 용어의 취지에 맞게 하자고 했고, 저희가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할 수가 없고 기술 쪽이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라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용어의 취지에는 맞는 거고 기타 절차나 이런 내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서일준 위원 운영이나 절차가 변경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전용길 예, 전혀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서일준 위원 오히려 신뢰 측면에서 보면 인증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국조실에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전용길 용어 정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라……

○서일준 위원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했냐고요. 바쁘신 분들이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고요.

○소위원장 박성민 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10쪽입니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용자 지원 등입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 비용에 대해서 용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출연이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출연·보조 외에 용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11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쪽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13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제16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4쪽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계량기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행정청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령 정비 사항입니다.

개정안에는 신고 수리 규정을 삭제하고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이 신고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문대비표 1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 아까 법안은 신고 수리 기간을 두고 이것은 반대로 없애 버리는……

○**이종배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요.

○**서일준 위원** 없애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법 취지가 계량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없애 버리면 오히려 소비자 측면에서는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전응길** 현재 계량기 수입업체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수리 절차 이후에도 사기나…… 저희가 사후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잘 쳐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혹시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전응길**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개정안처럼 운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전응길** 예, 그렇습니다.

○ **서일준 위원**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위원장님, 16쪽의 부칙 사항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예.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개정 사항은 시행 이후에 신고나 변경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17쪽입니다.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3개 법률에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일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현재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 용어에 차이가 있는 것을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0쪽입니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과 맞추기 위한 내용의 개정입니다. 개별법에는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조문이 삭제되지 않거나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일괄해서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요 정비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법률 개정, 이의신청과 관련된 것, 이행강제금, 과징금 그리고 기타 재재처분기한 상한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 18개 법률 개정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행정기본법과 비교해서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를 하고 이의신청이나 몇 가지 기간의 특례 등 특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 되겠습니다.

21쪽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법률이 10개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인허가 의제 조항 중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4쪽의 조문대비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4쪽의 4항에—세 번째 줄입니다—‘24조부터 26조까지를 준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문 정리하면서 수정의견을 몇 가지 낸 것 중에, 자구 수정입니다만 ‘준용’이 필요한 경우와 ‘따르다’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로 구별해서 준용의 경우가 아닌 따르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맞으면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페이지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의 4항 세 번째 줄에 있는 ‘준용하고’는 ‘따른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5쪽입니다.

○**이종배 위원** 다섯째 줄 ‘준용한다’, 두 가지이지 ‘준용하고’, ‘준용한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맞습니다. 다섯째 줄에도 ‘준용한다’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도 바꾸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아닙니다. 셋째 줄에 있는 ‘준용하고’만 ‘따른다’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섯째 줄은 그냥 ‘준용한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원이 위원** 용례가 다른 거구나.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준용하는 경우는…… 비슷한데 다른 경우입니다.

25쪽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도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입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것도 인허가 의제 관련 조항이 중복되는 것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의 조문대비표 중에서 개정안 맨 하단에 있는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것도 인허가 관련 조항이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것도 인허가 관련 조항이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6쪽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인허가 의제 관련된 조항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의 개정안 넷째 줄에 있는 '따른다'는 '준용한다'로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인허가 의제 관련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인허가 의제 관련 조항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는 4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경우에 인허가 의제 관련 조항이 중복되는 경우 삭제하고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있는 개정안 제5항의 셋째 줄에 있는 '준용하고'는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7쪽입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입니다. 인허가 관련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인허가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도 사실은 용어와 중복되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실체적인 내용을 실제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법안이 18개 개정되는 거구나.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번에는 이의신청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법률 3건입니다.

50쪽의 산업용합 촉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의 특례를 명시하면서 이의신청 연장 없이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대비표 51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것도 이의신청 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정비하고 53쪽 조문대비표에 보시는 것처럼 특례조항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오준총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이행강제금 제도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8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행정기본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정을 명시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60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개 이상의 정비사항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61쪽,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사항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의신청과 관련된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4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도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명시하는 내용이고 이의신청이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과 관련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의견제출기간에 특례를 부여하고 중복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쪽, 70쪽의 조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인허가의제와 관련해서, 조문대비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13조의2 1항에 있는 ‘협의한 사항’을 ‘미리 협의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 70쪽의 개정안 13조의4의 네 번째 줄에 있는 ‘따른다’를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75쪽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쪽에 기타 사항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강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본법에 있는 즉시강제를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78쪽 조문대

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재처분기간의 상한을, 정지조치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례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80쪽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81쪽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이 중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조문 정비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이 개정 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그 외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이 위원** 이것 18건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한규 위원** 일단 박성민 간사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저희가 믿어도 되는지 한번……

박 위원님, 수정한 것 다 맞는 내용입니까? 저는 다른 데하고 준용한다, 솔직히 다 일일이 쫓아가기가 좀 어려워서……

○**소위원장 박성민**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십시오.

○**김한규 위원** 위원장님을 따라도 되는지, 약속을 해 주시면 저희가……

○**소위원장 박성민**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시라고요.

(웃음소리)

○**김원이 위원** 옛날 21대 때 어떤 의원님이 똑같은 용어 정리한 것을 스물 몇 건을 상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그대로 통과시킨 적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한참 웃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이것 18건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저는 이것 별 수수료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김원이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만 차관님 오신 김에, 어제 긴급히 안건이 몇 건 들어왔는데 철강산업법 그리고 석유화학산업법, 5건의 안이 올라왔는데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봤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세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꼼꼼하게 세밀히 살펴서 다음 소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긍정적이시네.

○김원이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도 좀……

○소위원장 박성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권향엽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철강산업이라든가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 한미 통상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어서 아주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산업 자체는 굉장히 위기산업 대응이 필요한 그러한 산업으로서 현장의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하면 굉장히 분초를 다투어서라도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불요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철강산업이나 석유화학이 사실 한국이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 차관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철강산업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 그리고 석유화학공단은 전남 동부권에, 어떻게 보면 지금 까지 지역경제를 떠받들어 왔던 중심축이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이런 쪽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전환되면서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사실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 안을 제기하고 국회를 끌고 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진짜 참다 참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어제 대한상의에서 정책간담회를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의 지역이나 혹은 각 기업별로 이 문제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 측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리고 이게 여야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은 여야 의원님 구분 없이 다 관심 갖고 있고 합의할 충분한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이 제대로 된 안만 나오면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법 중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번 논의할 때는 위원장님께서도 안건 순서를 좀 당겨서라도 다음번에 꼭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산업부차관님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이 논의는 좀 속도를 붙여서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한말씀만……

○소위원장 박성민 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산업부가 사실 80년대까지 6개 개별 공업발전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WTO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각종 규제나 직접적인 지원 부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공업발전법으로 통일이 됐고 그게 현재의 산업발전법으로 변해 있습니

다. 그런데 바야흐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시대에 돌입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별 공업육성법 또는 개별 산업육성법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방향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과 철강 부분이 아직 WTO 체제가 유지되면서 WTO의 상계관세와 반덤핑 부분이 여전히 각 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부에서 꼼꼼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또 한 가지는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크게 법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인 건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WTO 체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다음번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한마디만.....

○소위원장 박성민 이 건에 대해서?

○김한규 위원 아닙니다. 내일 법안 중에 미리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소위원장 박성민 내일 법안이요?

○김한규 위원 아니, 여기 있는 법안 중에.....

○소위원장 박성민 예.

○김한규 위원 지금 5권에 보면 27번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법안의 논의를 과연 우리가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왜 그러면 비슷한 법안 중에 동남권 법안은 금융 관련된 부분이라 정무위에 가 있고 또 투자공사 부분은 기재위 법안이고 그래서 다음 논의하기 전에 이런 법안들을 다른 유관 부서랑 논의해서 저희 산중위에서 산자부 관련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건지부터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할 때 불필요한 논의를 안 할 수 있어서.....

이런 법안이 만약에 산자부 법안이라고 하면 오히려 다른 상임위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같이 논의하든지, 여하튼 한 군데 상임위로 몰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유관 기관의 협의를 미리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드리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더.....

○소위원장 박성민 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법안 1·2호 안건과 관련해서 3·4호 어린이 안전 특별법처럼 대리인 지정 제도 부분 쪽을 걷어 내고, 삭제하고 어린이 안전 특별법과 같이 그

부분을 1·2호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은 어떠신지 정부 측에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에 보면, 제가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권 1쪽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중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요. 3쪽 조문대비표에 있는 ‘해외’라는 명칭은 아까 광 위원님이 주셨던 수정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12쪽입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그것을 반영하고요. 수정의견으로 있는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 권리 및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수정의견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있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7쪽의 부칙 사항에 공포 후 시행시기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이의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예.

○김한규 위원 저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건이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라는 취지인데 제 걱정은 이것을 빼 버리게 되면,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집행력 없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데 산자부에서는 관계없습니까?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통과시키는 게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이 법 시행이 좀 빨리 되는 게 다른 종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대리인 제도 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하고 체크해서 필요시에는 재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김한규 위원님이 대리인 제도를 좀 넣어 주면 되지요.

○김한규 위원 그건 나중에 그러면 다른 분이 또 발의……

○소위원장 박성민 지금은 못 넣고 나중에 넣으려고요?

○김한규 위원 예, 나중에 다시……

○소위원장 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창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끝까지 회의를 함께해 주신, 너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원이 간사님.

권향엽 위원님은 조금 뒤에 오셨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앉아 계셔서 감사드리고.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4권·5권이 남았는데 이건 언제 할 겁니까? 내일 합니까?

○**소위원장 박성민** 아니, 내일 안 하지요. 내일은 또 다른 것 합니다. 내일은 2차관 것입니다. 이건 따로 잡아야 됩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이것 언제 하냐 이거예요.

○**소위원장 박성민** 따로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조선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굉장히 급한데……

○**소위원장 박성민** 따로 잡아야 됩니다, 날짜를.

○**김원이 위원** 그러면 9월 중이든, 국감 전에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건 따로 협의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한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송재봉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4선의 중진이신 이종배 위원님, 끝까지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일준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도 한 번도 이석 안 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신학 제1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님 또 보좌진,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곽상언 권향엽 김원이 김정호 김한규 박상웅 박성민 서일준 송재봉 이종배
장철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문신학

정책기획관 안창용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적합성정책국장 전웅길